

Vol. **112**

2023년 08월
해양환경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은 해양환경, 해사법률, 해사정책, 해사안전, 전략계획 등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발간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총 괄 박한선 실장
- 감 수 이연경 연구위원
- 발행인 김종덕 원장
- 발행처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해사산업연구실
-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TEL. 051-797-4800
- FAX. 051-797-48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IMO, 14년 만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선박 재활용 협약의 발효요건 충족

■ IMO ^{Hong Kong Convention} 홍콩협약, 협약 요건 충족으로 2025년 6월 26일 발효 예정

- 선박 해체작업, 1990년 후반부터 인명사고와 환경오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 ^{a),c)}
 - IMO는 2003년 선박 재활용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지침(Resolution A.962(23))을 채택하였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및 바젤협약 사무국과 함께 2009년 5월 15일 홍콩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적인 재활용을 위한 홍콩협약(SRC 2009)'를 채택함
 - 홍콩협약은 선박이 운항 수명을 다하고 재활용될 때 인체 건강, 안전과 환경에 어떠한 불필요한 위험도 노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500GT 이상의 국제무역 선박에 해당됨
 - 그러나 강제성을 가진 규정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침 미제공, 이해관계자 대상 명확한 의무 미부여로 환경 및 인권단체의 비난과 협약 요건 불충족으로 약 14년 이상 발효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었음
 - 홍콩협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15개 이상의 회원국 가입, 총 톤수 기준 전 세계 상선의 40% 이상과 가입한 국가들의 상선의 총 톤수 3% 이상이 선박 재활용 용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방글라데시와 라이베리아, 안전하고 환경적인 선박 재활용을 위한 협약 발효에 방아쇠(Trigger) 역할 ^{b)}
 - 2023년 6월 26일 방글라데시아와 라이베리아가 협약을 가입하면서 발효요건이 충족되면서, 협약 제17조 (발효요건 충족 이후 24개월 이내 발효)에 따라 2025년 6월 26일 발효될 예정임

〈그림 1〉 방글라데시 및 라이베리아의 홍콩협약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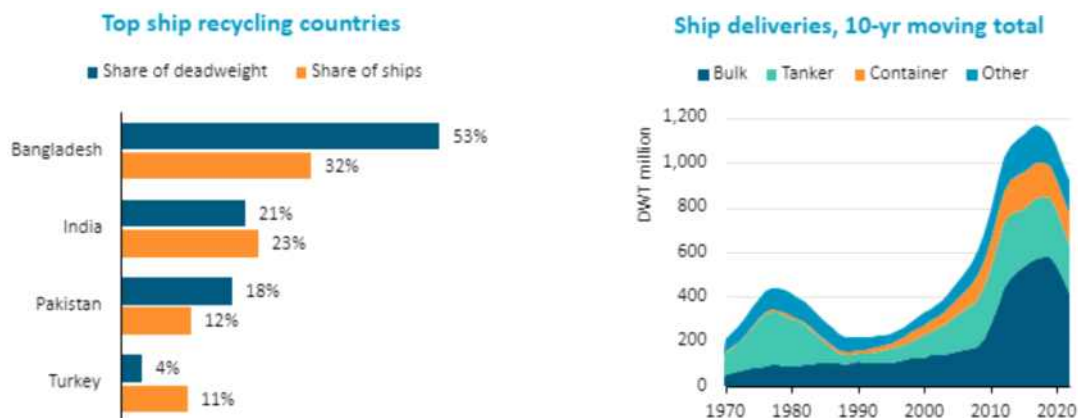
자료 : IMO(좌), Shutterstock(우)

주: 방글라데시 및 라이베리아의 협약 가입(좌), 선박 재활용 장면(우)

-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 재활용 국가 중 하나이며, 라이베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톤수의 기국으로서 해당 국가들의 가입은 톤수 기준 충족에 기여하면서 리더십과 헌신을 보여줌

- 그 동안 IMO는 노르웨이 지원(약 150만 달러)을 통해 방글라데시의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선박 재활용 프로젝트(SENSREC¹⁾) 추진과 홍콩협약 요건 충족을 위해 규정 및 표준 개선에 진전을 이룸
- 향후 10년('23~'32) 동안 15,000척¹⁾ 이상의 선박(과거 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이 재활용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홍콩협약의 발효는 국제해운 산업, 환경, 선박 재활용을 위한 근로자 및 지역사회를 위한 유의미한 발전임
- 또한, 안전하고 환경적이며 건전한 방식으로 선박을 처리하게 함으로서 선주, 조선소, 선박 재활용 시설, 기국, 항만국, 재활용 국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게 됨

〈그림 2〉 선박 재활용산업 상위 국가(좌) 및 과거 10년 동안의 인도된 선박 재화중량톤수(우)



자료 : IHS Markit, BIMCO

■ EU, EU 자체적 선박 재활용 규정에 따라 재활용 야드 추가 승인

➤ EU는 이미 자체적인 선박 재활용 규정을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어 ⁹⁾

- EU는 2007년 7월부터 EU 폐기물 규정(EU WSR: Waste Regulation)을 발효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EU 및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의 수역 내 500GT 이상의 모든 선박에 적용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 내에서 재활용될 수 있음
- 이후 EU는 선박의 재활용에 의해 발생하는 해로운 폐기물을 관리하여 선박의 생애주기 동안 인체건강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홍콩협약 비준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 그에 따라 2013년 11월 EU 법률 내 홍콩협약의 선박 재활용 요건을 반영한 선박 재활용 규정(SRR: Ship Recycling Regulation) 채택하였고 당해연도 12월에 발효되었지만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야 비로소 완전히 적용됨

1)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Ship Recycling in Bangladesh 프로젝트로서 노르웨이가 2015년부터 3단계에 걸쳐 총 약 40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방글라데시의 산업부 및 선박재활용협회(BSBRA)와 협력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도전과 기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발전시킴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7월 27일 터키의 야드 3곳을 새로운 재활용 시설로 포함한 제11차 유럽의 선박 재활용시설 목록을 채택함으로써 하면서 총 48개의 야드가 유럽의 재활용 시설로 승인받음 c),d),e)
- EU의 SRR은 선박이 EU에서 승인한 선박 재활용 시설의 목록(이른바 유럽 목록)에 포함된 야드 중 한 곳에서 재활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27일 터키의 야드 3곳을 새롭게 추가함
 - 이로써 유럽 목록은 EU, 노르웨이 및 영국에 있는 38개의 야드, 터키의 9개 야드와 미국의 1개 야드로 총 48개의 선박 재활용 시설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몇 개의 야드는 대형 선박 수용이 가능함
 - 그러나 SRR은 EU 국적선이 유럽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야드에서 재활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럽 리스트에 포함된 야드의 대부분은 대형 선박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음
 - 선주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의 야드에서 선박을 재활용하는 경우 경하배수톤수(LDT: Light Displacement Tonnage)당 두 배 이상의 달러를 지불받을 수 있기에 규정을 회피할 사유가 될 수 있음

〈그림 2〉 유럽의 선박 재활용 시설 목록

Name of the facility	Method of recycling	Type and size of ships that can be recycled	Limitations and conditions under which the ship recycling facility operates, including at regular hazardous waste management	Details on the explicit or tacit approval for the approval of the ship recycling plan for the competent authority	Maximum annual ship recycling output, calculated at the time of the weight of ships expressed as LDT that have been recycled in a given year at that facility	Date of expiry of inclusion as the European List
NV Galloo Recycling Ghent Schepsteestraat 9 9000 Ghent BELGIUM Tel. +32 92512921 Email: peter.wyrtia@galoo.com	Alongside (over berth) - slip	Ships as defined in point (1) of Article 1(1) of Regulation (EU) No 1257/2013 Maximum ship dimensions: Length: 245 meters Width: 37 meters Draught: 12.5 meters		Tacit approval, with a maximum review period of 30 days	34 000 (1)	31 March 2025

자료 :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23/1562

IMO 홍콩협약, EU SSR과 상호작용에 대한 도전과제 해결해야

- ▶ 비정부기구, 환경운동가, 환경단체들은 홍콩협약의 비준이 명시적인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 여전히 우려
- SSR과 달리 홍콩협약은 해변에서의 재활용을 금지하지 않으며 이미 홍콩협약에 승인된 야드는 표준을 향상시킬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없을 수 있으며, SSR은 유럽 목록에 승인된 남아시아의 야드가 없는 상황임
 - 환경 보호, 순환경제로 전환, 빈곤 및 불평등 해소, 안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홍콩협약의 기준 역시 협약을 채택한 14년 전보다 상향시킬 필요가 있으며, EU SSR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규제 입안과 이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김보람 전문연구원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해사산업연구실
(zzz3678@kmi.re.kr / 051-797-4640)참고
자료

- a) KMC, 「미가입협약 국제동향 및 국내현황 - 선박재활용 협약 2009」, 2021.10. (검색일: 2023.08.03.)
- b) IMO, <https://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Hong-Kong-Convention-set-to-enter-into-force-.aspx> (검색일: 2023.08.04.)
- c) <https://safety4sea.com/cm-the-hong-kong-convention-enters-into-force-on-26-june-2025/> (검색일: 2023.08.03.)
- d) <https://safety4sea.com/eu-approves-three-more-recycling-yards/> (검색일: 2023.08.03.)
- e) EC,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23/1562, amending Implementing Decision (EU) 2016/2323 establishing the European List of ship recycling facilities pursuant to Regulation (EU) No 1257/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검색일: 2023.08.03.)
- f) <https://www.bimco.org/news-and-trends/market-reports/shipping-number-of-the-week/20230516-snow> (검색일: 2023.08.01.)